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591

발의연월일: 2022. 5. 13.

발 의 자:윤재옥·강민국·구자근

김승수 · 김희곤 · 양금희

유의동 • 이양수 • 이종배

홍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그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 후단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전단 부분에 따라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② 제75조제1항 후단 부분에 따른 이자의 가산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u>사람</u> 이 다음 각 호의	사람(상속인을 포함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	다)
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	
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	
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	
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 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	
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	
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	
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u>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